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등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공사, 용역, 물품의 구입은 검수 시 검수조서를 생략하고 구입과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분임물품 출납원의 검수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규정

□ 지적사항

사례1> 물품의 매입·수리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가 지급 후 사후 작성

사례2>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특히 자산성 물품의 경우 내용연수 도래 전 훼손 분실, 임의처분, 사적유용 및 수익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부작성을 하여야 함에도 미등록 관리

□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 물품 대가 지급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